

# 審 查 報 告 書

1999. 12. 22  
産業建設委員會

## 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9. 12. 14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9. 12. 16
- 라. 上程日字 : 1999. 12. 21 ~ 12. 22

## 2. 提 案 說 明 要 旨 (提 案 說 明 : 上 下 水 道 事 業 所 長 金 亨 來)

### 가. 提 案 理 由

- ◎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의설치및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

### 나. 主 要 骨 子

- ◎ 설치 및 관리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서산시 양대동 801번지 일원으로 규정함(안 제2조).
- ◎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업무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).

- ◎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제7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).
- ◎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수 있도록 하고 위탁관리할 경우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- ◎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함(안 제6조).
- ◎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위법,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.
- ◎ 민간위탁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(안 제8조제1항).

#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◎ 이 조례는 지난 11월 8일 시험가동하여 12월말 준공예정인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의설치및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본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,
- ◎ 하수도법 제7조 및 제17조, 제18조에 규정된 공공하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와 위탁기간, 협약의 해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써, 본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.

- ◎ 다만, 하수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등 하수도 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비의 적정가 산정과, 수탁업체의 전문기술력 확보, 그리고 기 자재 유지관리상 업무의 한계 등을 명확히하여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27호
의결 년월일	1999. 12. 24. (제 47회)

##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

제출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12. 14.

#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및관리조례안

의안 번호	127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1999. 12. 14  
제출자 : 서산시장

## 제정 이유

-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

## 주요 골자

- 설치 및 관리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서산시 양대동 801번지 일원으로 규정함(안 제2조).
-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업무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제7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).
-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수 있도록 하고 위탁관리할 경우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-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함(안 제6조).
-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위법,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.
- 민간위탁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(안 제8조제1항).

□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

나. 예산조치 사항(별첨)

다. 관련 부서 협의

(1) 서산시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- 해당없음

(2) 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- '99.7.16.민간위탁대상시설로 결정

라. 입법 예고 - '99.11. . :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

##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및관리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수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(이하 "하수처리장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하수처리장은 서산시 양대동 801번지 일원에 둔다.

제3조(관리업무의 범위) 하수처리장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### ①하수 처리분야

1.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
2.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
3. 오·폐수 처리
4. 하수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
5. 기자재 정비,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
6. 하수처리장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
7.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, 시험
8.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
9.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
10. 주변환경영향검사 및 기록유지
11. 기타 시장이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②분뇨처리 분야

1. 분뇨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
2. 분뇨계량확인 및 기록유지
3.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
4. 기타 시장이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4조(관리운영)** ①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와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- 제5조(공무원등)** ①시장은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들 수 있다.
- ②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탁 기간)**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**제7조(협약의 해지)**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
2. 하수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
3. 위탁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4.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
5. 기타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.

**제8조(관리운영비용등)** ①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21조의 규정에

의하여 사용료등으로 관리운영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